

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데 담세력을 인정하여 매년 과세하는 조세성격에 비추어 세무행정능률과 국민들의 납세면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날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입법 정책적으로 신중한 절도를 거친 후 채택된 제도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지방재정의 형편, 국민의 세부담능력, 징세비용 및 국민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과세기준일 제도도 입법 정책적으로 신중한 절도를 거친 후에 채택·의결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재산세는 부동산에 과세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부동산이 철거 등으로 인한 이동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면 조세행정의 간편화와 징세비용의 절약은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도 배배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재산세 납부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 된다고 하겠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준일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할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 대법원에서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 침해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 97누6186, 1998.5.29)

#### 다. 재산세 과세체계상 운영곤란

현행 보유과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고 재산세는 물건과세(토지는 관내합산)이나 종합부동산세(토지 및 주택)는 전국 세대별 합산체계로 되어 있고, 재산세의 납기로 견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분은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율체계도 토지 등의 이용용도나 기액에 따라 여러 단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등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작성·발송하는 등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는 과세체계상 소유권 변동시마다 세액산출을 하여야 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채택하기에는 구조적·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